

|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20035      |
| 의 퇴 인 | 조계원의원        |
| 회 답 일 | 2026. 7. 30. |
| 추계번호  | 26C3602      |

#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## 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33조의4(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의 위탁관리) |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로서 대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(이하 “회원종목단체”라 한다)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함(제1항)<br>회원종목단체는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선거관리위원회법」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함(제2항) | 의무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회원종목단체의 회장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
## 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### 1. 근거 규정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| 미첨부 근거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33조의4(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의 위탁관리) |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|

### 2. 상세 사유

-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경비 지원(안 제33조의4)
  - 개정안은 회원종목단체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, 그에 대한 선거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의무화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 관련 필요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,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

- 다만, 개정안 시행에 따른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 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지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 - 참고로 안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투표로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경기단체는 대한체육회 정회원 단체 64곳임

【표 1】 대한체육회 정회원 단체 목록

| 연번 | 단체명             | 연번 | 단체명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|
| 1  | 대한가라테연맹         | 33 | 대한스키·스노보드협회 |
| 2  | 대한검도회           | 34 | 대한승마협회      |
| 3  | 대한게이트볼협회        | 35 | 대한씨름협회      |
| 4  | 대한골프협회          | 36 | 대한아이스하키협회   |
| 5  | 대한국학기공협회        | 37 |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 |
| 6  | 대한궁도협회          | 38 | 대한양궁협회      |
| 7  |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     | 39 | 대한에어로빅합합협회  |
| 8  | 대한근대5종연맹        | 40 | 대한역도연맹      |
| 9  | 대한민국농구협회        | 41 | 대한요트협회      |
| 10 | 대한당구연맹          | 42 | 대한우슈협회      |
| 11 |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    | 43 | 대한유도회       |
| 12 | 대한럭비협회          | 44 | 대한육상연맹      |
| 13 | 대한레슬링협회         | 45 | 대한정구협회      |
| 14 | 대한롤러스포츠연맹       | 46 | 대한조정협회      |
| 15 | 대한루지경기연맹        | 47 | 대한민국족구협회    |
| 16 | 대한바둑협회          | 48 | 대한주짓수회      |
| 17 | 대한바이애슬론연맹       | 49 | 대한민국줄넘기협회   |
| 18 | 대한배구협회          | 50 | 대한철인3종협회    |
| 19 | 대한배드민턴협회        | 51 | 대한체조협회      |
| 20 | 대한보디빌딩협회        | 52 | 대한축구협회      |
| 21 | 대한복싱협회          | 53 | 대한카누연맹      |
| 22 | 대한볼링협회          | 54 | 대한컬링연맹      |
| 23 |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 | 55 | 대한탁구협회      |
| 24 | 대한빙상경기연맹        | 56 | 대한태권도협회     |
| 25 | 대한사격연맹          | 57 | 대한택견회       |
| 26 | 대한사이클연맹         | 58 | 대한테니스협회     |
| 27 | 대한산악연맹          | 59 | 대한파크골프협회    |
| 28 | 대한세팍타크로협회       | 60 |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 |
| 29 | 대한수상스키·웨이크스포츠협회 | 61 | 대한펜싱협회      |
| 30 | 대한수영연맹          | 62 | 대한하키협회      |
| 31 | 대한수중·핀수영협회      | 63 |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 |
| 32 | 대한스쿼시연맹         | 64 | 대한핸드볼협회     |

자료: 문화체육관광부

- 따라서 개정안은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사항을 현 단계에서 파악하기 어려워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에 해당

### Ⅲ. 부대의견

- 없음

### Ⅳ. 작성자

-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사회비용추계과 | 이제정 | 문지은 |

-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|
| 이제정 | 02-6788-3739 | jejeong2@na.go.kr |